

### 99.일반·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6. 21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애결특위 상정 및 심사 의결

○ 상정 : 2000. 7. 3

○ 심사 및 의결 : 2000. 7. 3

#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세무국장 박경선)

가. 제안이유

○ 99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(예비비)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사항임

나. 예비비 지출 현황

(단위 : 원)

구 분	지출건수	지출결정액	지출액	잔액
계	13	908,485,280	856,758,550	51,726,730
일반회계	11	844,597,000	794,276,270	50,320,730
공기업특별회계	1	50,482,280	50,482,280	0
공영개발	1	50,482,280	50,482,280	0
기타특별회계	1	13,406,000	12,000,000	1,406,000

#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문내용	답변내용
○ 정보관리과에서 99년 4월 28일 업무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을 정품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예비비 2억 2천 8백만원을 지출결정하고 7월 12일부터 10월 27일 사이에 집행하였는 바, 예비비 지출사유	○ 그간 우리 시에서 불법복제품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나 서울시청에서 열린 회의결과 대검에서 집중단속을 한다는 말에 이에 대응코자 4월 28일 지출결정 후 5월 8일 조달요청하였음. 따라

가 5월 공공기관 중점단축에 대비해서 급하게 4월말에 지출결정을 하였는데 10월이 되서 정품이 들어온 사유는 무엇이며,

- 98년도부터 불법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해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, 본 사안은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시점에 증액요구 등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음
- 또한 그간 물품조달이 유찰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지출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지출결정액과 집행액이 일치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니 자료제출 요망

서 즉시 납품 가능한 품목은 바로 납품이 되어 집행이 이루어졌으며, 입찰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유찰이 되어 지연집행되었음

- 증빙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음

4. 토론요지

- 생략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- 생략

99.일반·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

의안번호	제329호
의결년월일	2000. 7. 6 (제79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6. 19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0조(예비비)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임

□ 승인근거

지방자치법 제120조(예비비)제2항

□ 주요골자

가. 예비비 지출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예비비	구성비	지출 건수	지출 결정액	지출액	비고
계	591,204,290	23,358,578	4.0	13	908,486	856,760	
일반회계	357,519,565	5,579,277	1.6	11	844,597	794,277	
특별회계	233,684,725	17,779,301	7.6	2	63,889	62,483	
공기업회계	184,248,020	2,103,583	1.1	1	50,483	50,483	
상수도사업	51,901,383	1,000,000	1.9	0	0	0	
하수도사업	22,676,729	81,275	0.4	0	0	0	
공영개발사업	109,669,908	1,022,308	0.9	1	50,483	50,483	
기타특별회계	49,436,705	15,675,718	31.7	1	13,406	12,000	
주택사업	48,482	32,950	68.0	0	0	0	
의료보호기금	10,912,892	0	0	0	0	0	
새마을소득사업	199,888	49,888	25.0	0	0	0	
토지구획정리사업	14,446,958	12,948,399	89.6	0	0	0	
영세민생활안정	612,000	214,000	35.0	0	0	0	
교통사업	12,272,888	1,214,871	9.9	0	0	0	
경영수익사업	10,943,597	1,215,610	11.1	1	13,406	12,000	

나.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 : 불임

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불임

##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

□ 일반회계

(단위 : 원)

사 업 명	지 출 결정일	지출결정액	지 출 액	잔 액	지 출 사 유	지출 부서
계 11건		844,597,000	794,276,270	50,320,730		
공공기관 S/W 불법 복제품 사용근절에 따른 정품구입비	99. 4. 28	228,079,000	228,079,000	0	공공기관의 S/W 불법 복제품 사용근절 및 99. 5월 중점단속에 대 비한 업무용 필수 정 품구입비	정 보 관리과
주민등록증 일제갱 신에 따른 조명등 구입	99. 5. 27	12,250,000	11,550,000	700,000	화상입력 시험결과 입 력 조도저하에 따른 문 제점 해결을 위해 조명 등 구입	시 민 복지과
명예퇴직수당지급	99. 7. 20	57,230,000	57,230,000	0	99. 7월 명예퇴직신청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 당 지급	총무과
99. 7. 31~8. 2 경기북부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	99. 8. 5	25,540,000	10,774,260	14,765,740	경기북부지역 수해피해 복구지원경비로 지출결 정하였으나 지원규모 축소로 불용액 발생	총무과
99. 7. 31~8. 2 경기북부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차량 임차료	99. 8. 5	2,800,000	1,650,000	1,150,000	경기북부지역 수해복구 지원에 따른 차량임차 료 지급	총무과

(단위 : 원)

사 업 명	지 출 결정일	지출결정액	지 출 액	잔 액	지 출 사 유	지출 부서
99. 7. 31~8. 2 경기북부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 청소 차량 지원	99. 8. 5	2,538,000	2,013,750	524,250	경기북부지역 수해복구 를 위한 청소 차량 유 류대 등 지원경비	청 소 사업소
명예퇴직수당지급	99. 8. 26	183,446,000	172,956,000	10,490,000	99. 8월 명예-조기 퇴 직자에 대한 수당 부 족분 지급	총무과
부천시의회의원 재 선거 부담금(역곡2 동선거구)	99. 9. 22	36,698,000	34,693,860	2,004,140	공직선거법 제22조 규 정에 의한 선거관리위 원회 부담금 지급	총무과
약대동 79-1번지 일원 도로개설 편 입용지보상	99. 3. 10	116,884,000	116,883,600	400	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과에 따른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 물 보상비 지급	원미구 건설과
춘의동 절개지 수 해피해 복구비	99. 8. 5	176,237,000	155,610,000	20,627,000	99. 8. 2 집중호우에 따른 원미구 춘의동 절개지 응급복구 공사 비 지급	원미구 건설과
대풍상가 화재지역 안전시설물 설치	99. 3. 10	2,895,000	2,835,800	59,200	99. 7월 명예퇴직신청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 당지급	소사구 건설과

특별회계

○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원)

사 업 명	지 출 결정일	지출결정액	지 출 액	잔 액	지 출 사 유	지출 부서
계 1건		50,482,280	50,482,280	0		
부당이득금반환청 구소송에 따른 부 당이득금 지급	99. 2. 19	50,482,280	50,482,280	0	도로 무단 점·사용 부 당이득금 청구소송 패 소에 따른 지출	도시개발 사 업 소

○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원)

사 업 명	지 출 결정일	지출결정액	지 출 액	잔 액	지 출 사 유	지출 부서
계 1건		13,406,000	12,000,000	1,406,000		
【경영수익사업】 시설관리공단 설 립타당성 검토용 역비	99. 3. 23	13,406,000	12,000,000	1,406,000	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 3항 규정에 따른 타당 성 검토용역비 지급	기 획 예산과

관계 법령 발 취 서

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
내 용

제120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는 계상하여야 한다.

②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